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678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6781)

검 토 보 고

< 고등학교 및 대학(원)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0.
3. 회부연월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편입학과 관련된 부정·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6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은 김민전의원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편입학과 관련된 부정·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원)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제6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육공무원의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개정안은 대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과, 고등학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의 시효를 연장하고 있음.(「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52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u>

현행	개정안
	<u>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u>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징계사유의 시효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¹⁾,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²⁾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법」은 현재 그 외 특

-
-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 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례로서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3)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4)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징계사유인 경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시비리의 경우 입시비리가 밝혀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⁵⁾⁶⁾가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입시비리를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범위에 포함하여 입시공정성 확립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2.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사립학교법」으로의 준용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준

-
-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 3)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5) 연세대 前부총장 딸 부정입학 관련자 '단순 경고'...논란 예고(이데일리, 2020.10.14.)
 - 6) '자녀스펙용 논문' 무더기 적발... 서울대 등 교수 7명 11건(문화일보, 2019.10.17.)

를 다르게 대우할 필요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는 입시는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정행위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현행 법령 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교육공무원법), 성폭력범죄 등(국가공무원법)에 대해 징계시효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7)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